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04316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75번지 전화 : 02-778-4017 전송 : 02-3147-1444 메일 : antipoorkr@gmail.com 홈페이지 : antipoor.jinbo.net

수신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참조	사회부
발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02-778-4017)	문의	빈곤사회연대 윤애숙 (010-3399-5017)
일자	2017. 04. 27. (목)		
제목	[보도자료] 범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선언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하 ‘<폐지행동>’)은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의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4.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100만 명이 넘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내는데 빈곤 당사자들과 가장 가까운 사회복지계에서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폐지행동>에서는 4월 한 달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사회복지계(사회복지학계, 사회복지노동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학과학생, 사회복지단체 활동가 등)의 연명을 온 오프라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이를 모아 지지의 목소리를 보태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범 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선언>

○ 일시: 2017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앞

첨부1. 기자회견 순서

첨부2. 범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선언문

첨부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사회복지계선언 경과 보고

첨부4.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책 해설안

〈범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선언〉

○ 일시: 2017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앞

○ 순서:

기조발언 및 사회. 윤애숙_빈곤사회연대

촉구발언1. 이원교_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사

촉구발언2. 이지웅_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촉구발언3. 김경훈_서울복지시민연대

촉구발언4. 신현석_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촉구발언5. 유금문_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선언문낭독

퍼포먼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몫소리〉

사회복지 현장 1호 문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나는 모든 인간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사회복지사 선언문의 내용이다. 그렇다. 우리는 사회복지에 몸담은 이들로써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들의 편에 서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한 이들을 사회로부터 복지로부터 소외시키고 고통 주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가난에 고통 받고 있다. 생계가 어려워 기초생활수급 신청한 이들의 절반 이상이 함께 살지도 않는 가족, 연락조차 되지 않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눈물지으며 돌아서는 모습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사회복지 현장에 몸담고 있는 이들에게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고통이다.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라며 현장 사회복지 인력들을 쥐어짜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발굴해도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치다 보면 연락도 안 되는 부양의무자, 실제로 부양받을 수 없는 부양의무자들이 서류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각지대 발굴로 업무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는데,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은 사회복지사들에게 회의감과 자괴감을 줄 뿐이다. 이는 결국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보수적으로 처리하게 만들어 빈곤 당사자들의 권리를 후퇴시킨다.

이렇듯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고쳐야 할 1호 문제이다. 당사자들에게도,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게도 고통만 주는 악법을 이제 끊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 사각지대 주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하라!

2017년 4월 27일

범 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선언 참가자 일동

첨부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사회복지계선언 경과 보고

<폐지행동>에서는 4월 한 달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원하는 선언인을 모집했습니다. 선언에 참가한 이들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노동자, 사회복지학을 연구하는 학자·학생, 사회복지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활동가 등입니다. 총 1,899인이 선언에 참여했으며, 참가한 이들의 명단은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1,899인이라는 숫자가 여타 서명운동에 비해 적어보일 수 있으나, 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주로 공공기관,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큰 성과입니다. 이를 고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언에 참가하신 분들이 남겨주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한마디'는 각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선언 참가자 명단(이름이 같은 이들은 병기하였습니다.)

김기호, 강경미, 강경희, 강금조, 강대준, 강동화, 강동희, 강래성, 강미선, 강민영, 강민호, 강봉하, 강석구, 강성구, 강성주, 강세경, 강세진, 강소연, 강슬기, 강영수, 강영진, 강영희, 강예원, 강외택, 강유신, 강은경, 강은선, 강은숙, 강은아, 강은이, 강인목, 강인순, 강점숙, 강정모, 강정희, 강지현, 강태길, 강태원, 강태진, 강하영, 강현우, 강현주, 고기환, 고상진, 고석우, 고석희, 고숙희, 고순호, 고슬기, 고승현, 고영애, 고영자, 고유미, 고은정, 고인아, 고재동, 고재연, 고창현, 고한철, 고현주, 공귀순, 공윤희, 공필재, 광미소, 광은정, 광은주, 광재식, 광진호, 광혜림, 구문정, 구문정, 구문정, 구본경, 구본웅, 구선희, 구자강, 구자현, 권경덕, 권경아, 권경자, 권구일, 권금희, 권기웅, 권동우, 권동우, 권미옥, 권상철, 권세훈, 권소연, 권소영, 권소현, 권순하, 권연경, 권연경, 권영애, 권영은, 권옥현, 권종순, 권지연, 권지연, 권태용, 권태용, 권태용, 권태용, 권혁숙, 권혜란, 권혜리, 금민희, 금현숙, 기현주, 길은실, 김관식, 김미령, 김영미, 김가혜, 김가혜, 김갑사, 김개미, 김경규, 김경미, 김경미, 김경민, 김경민, 김경민, 김경숙, 김경숙, 김경숙, 김경연, 김경연, 김경연, 김경옥, 김경일, 김경자, 김경훈, 김경희, 김광명, 김광이, 김광제, 김군욱, 김규홍, 김군열, 김기림, 김기호, 김기환, 김나리, 김나혜, 김난미, 김남신, 김남영, 김다슬, 김대군, 김대덕, 김대석, 김대석, 김대영, 김대웅, 김대웅, 김대현, 김대호, 김도호, 김동규, 김라현, 김명선, 김명선, 김명실, 김명실, 김명용, 김명자, 김명진, 김명진, 김명진, 김명철, 김명희, 김명희, 김미강,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금, 김미래, 김미령, 김미리, 김미리, 김미선, 김미선, 김미성, 김미숙, 김미숙, 김미영, 김미영, 김미영, 김미옥, 김미주, 김미하, 김민경, 김민석, 김민영, 김민영, 김민정, 김민주, 김민진, 김민하, 김민혜, 김백정은, 김병수, 김병수, 김병호, 김병훈, 김보영, 김보현, 김봉준, 김삼용, 김삼곤, 김삼목, 김상미, 김상화, 김상환, 김상희, 김새롬, 김새롬, 김샤론, 김서진, 김석주, 김선경, 김선득, 김선미, 김선숙, 김선숙, 김선영, 김선영, 김선옥, 김선자, 김선형, 김선화, 김선화, 김성겸, 김성근, 김성남, 김성남, 김성남, 김성남, 김성남, 김성동, 김성득, 김성란, 김성란, 김성례, 김성례, 김성미, 김성하, 김성훈, 김세준, 김세진, 김소라, 김소연, 김소영, 김소희, 김수경, 김수빈, 김수산나,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용, 김수원, 김수정, 김수정, 김수진, 김수진, 김수진, 김숙연, 김숙희, 김순구, 김순애, 김순자, 김순지, 김슬아, 김승우, 김승태, 김신, 김신기철, 김아영, 김애경, 김애경, 김애리, 김연명, 김영경, 김영규, 김영락, 김영란, 김영림, 김영미, 김영수, 김영식, 김영애, 김영애, 김영웅, 김영은, 김영주, 김영주, 김영준, 김영춘, 김영택, 김영혜, 김예림, 김예지, 김오순, 김옥연, 김옥자, 김옥희, 김옥희, 김요인, 김요인, 김용란, 김용진, 김용철, 김용호, 김우람, 김원표, 김위선, 김유정, 김유진, 김유진, 김유황, 김윤경, 김윤영, 김윤주, 김윤희, 김윤환,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비, 김은성, 김은숙, 김은아,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준, 김은진, 김은하, 김은혜, 김은혜, 김응진, 김의곤, 김이나, 김인녀, 김인숙, 김인애, 김인영, 김인영, 김일화, 김자경, 김잔디, 김재민, 김재안, 김재원, 김재원, 김재호, 김전호, 김전호, 김정, 김정남, 김정목, 김정미, 김정미, 김정선, 김정수, 김정아, 김정연, 김정연, 김정은, 김정진, 김정철, 김정하, 김정현, 김정화, 김정환, 김정훈, 김정희, 김종건, 김종금, 김종석, 김종숙, 김종원, 김종현, 김종현, 김종환, 김주일, 김주휘, 김주휘, 김주희, 김준석, 김준영, 김준우, 김준호, 김종미, 김종희, 김지수, 김지수, 김지안, 김지애, 김지애, 김지연, 김지에, 김지은, 김지태, 김지태, 김지학,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훈, 김진, 김진, 김진국, 김진모, 김진솔, 김진수, 김진아, 김진영, 김진영, 김진용, 김진우, 김진우, 김진욱, 김진원, 김진주, 김진형, 김진희, 김진희, 김진희, 김진희, 김찬빈, 김창식, 김창훈, 김채린, 김철수, 김치환, 김태경, 김태완, 김태인, 김태현, 김태희, 김태희, 김태희, 김택주, 김평화, 김평화, 김푸름, 김필순, 김하나, 김하나, 김하나, 김한려일, 김한려일, 김한려일, 김한려일, 김한려일, 김한려일, 김한려일, 김한려일, 김한려일, 김한려일, 김

한려일, 김한려일, 김한분, 김한솔, 김해정, 김향순, 김향순, 김향순, 김현미, 김현섭, 김현숙, 김현완, 김현
욱, 김현자, 김현진, 김현표, 김현화, 김형모, 김형임, 김형진, 김혜경, 김혜민, 김혜숙, 김혜원, 김혜진, 김
혜진, 김혜진, 김혜진, 김호수, 김호연, 김호연, 김홍진, 김화숙, 김훈, 김희경, 김희근, 김희란, 김희정, 나
도현, 나미숙, 나미혜, 나영혜, 나현혜, 나혜인, 나희라, 남기룡, 남다현, 남동진, 남미우, 남방연, 남선진,
남소연, 남순옥, 남예숙, 남윤아, 남재욱, 노선아, 노시훈, 노영민, 노영웅, 노유리, 노재영, 노재욱, 노진영,
노현수, 노혜련, 노훈천, 도숙임, 라유지, 류경미, 류경미, 류성원, 류소희, 류은경, 류재욱, 류종욱, 류형진,
마광석, 마선미, 마선미, 마인혜, 맹경숙, 맹희영, 명현지, 문경희, 문다영, 문병수, 문상민, 문상훈, 문서
희, 문영찬, 문윤경, 문은주, 문은주, 문재욱, 문종권, 문종석, 문태성, 문혜원, 민병철, 민세연, 민승기, 민
연홍, 민자영, 박 귀련, 박경덕, 박경석, 박경오, 박계순, 박관희, 박근주, 박근환, 박나연, 박나연, 박남숙,
박단, 박명애, 박명애, 박명애, 박명용, 박문수, 박문희, 박미경, 박미선, 박미숙, 박미숙, 박미애, 박미영,
박미진, 박미진, 박민영, 박민현, 박병선, 박복순, 박상룡, 박새솜, 박새솜, 박서빈, 박선주, 박선향, 박성심,
박성준, 박성중, 박성진, 박세레나, 박소윤, 박소정, 박송이, 박수영, 박수영, 박수영, 박수영, 박수영, 박수진, 박
순아, 박순아, 박슬기, 박시웅, 박애숙, 박연희, 박연희, 박영례, 박영룡, 박영민, 박영민, 박영애, 박영주,
박영춘, 박옥경, 박용복, 박용연, 박용주, 박운영, 박운기, 박윤섭, 박윤섭, 박윤섭, 박윤섭, 박윤영, 박윤희,
박은경, 박은경, 박은경, 박은미, 박은미, 박은숙, 박은영, 박은영, 박은정, 박은정, 박은주, 박응석, 박응석,
박인성, 박일주, 박장용, 박재은, 박재중, 박재춘, 박재호, 박재호, 박정미, 박정식, 박정식, 박정아, 박정아,
박정은, 박정혜, 박정호, 박정희, 박종규, 박종규, 박종숙, 박종식, 박주경, 박주중, 박준홍, 박지애, 박지
영, 박지은, 박지주, 박지혜, 박지희, 박진, 박진석, 박진석, 박진아, 박진영, 박진제, 박찬동, 박찬은, 박채
연, 박채연, 박철화, 박충중, 박충중, 박치영, 박태숙, 박하나, 박한희, 박해궁, 박해영, 박혁신, 박현, 박현
미, 박현주, 박현준, 박현진, 박현희, 박현희, 박형원, 박혜경, 박혜린, 박혜준, 박화진, 박효진, 박희경, 반
순미, 반주희, 방데레사, 방수진, 방신실, 방원국, 방희진, 배남식, 배남철, 배병휴, 배상철, 배연숙, 배은
정, 배은희, 배은희, 배인재, 배인호, 배일환, 배재현, 배준영, 배중대, 배진숙, 백경민, 백경진, 백명희, 백
미화, 백선우, 백승미, 백승호, 백영미, 백영서, 백정혜, 백향목, 백현빈, 백혜진, 백희선, 변경택, 변미혜,
변수정, 변양순, 변윤선, 변종목, 변희중, 부희영, 서가운, 서문지애, 서미경, 서민영, 서민화, 서성윤, 서수
현, 서순아, 서영섭, 서영흔, 서영흔, 서유진, 서정원, 서정울, 서정학, 서정학, 서정화, 서정화, 서창순, 서
필수, 서한나, 서현영, 서효숙, 서희정, 서희정, 서희정, 석두원, 석영미, 선진 복지사회자, 선철규, 성광철,
성미선, 성수연, 성은아, 성정숙, 성진욱, 성현주, 소경숙, 소리나, 손단비, 손미경, 손미선, 손미숙, 손민균,
손민희, 손보경, 손보기, 손선희, 손성은, 손연화, 손원진, 손은영, 손은정, 손지나, 손지완, 손지혜, 손진성,
손현일, 송경선, 송경용, 송광성, 송국연, 송근원, 송기호, 송명선, 송민화, 송석희, 송승이, 송순교, 송순희,
송승환, 송아련, 송용주, 송윤면, 송은영, 송익현, 송인선, 송인한, 송정미, 송정아, 송준영, 송준희, 송준희,
송진호, 송철민, 송철민, 송철호, 송현섭, 송현우, 송혜지, 송근배, 신동준, 신동진, 신미영, 신미용, 신상록,
신상우, 신상우, 신선미, 신소희, 신순영, 신승협, 신은희, 신은희, 신인규, 신재영, 신지은, 신지은, 신지
훈, 신진, 신창호, 신현미, 신현석, 신현중, 신혜경, 신혜경, 신혜리, 신혜정, 신혜정, 신황, 신희정, 심경
희, 심난영, 심민섭, 심보경, 심우기, 심우기, 심유경, 심정보, 심지선, 심현지, 안경희, 안덕인, 안민순,
안병국, 안병모, 안병훈, 안상호, 안서영, 안선이, 안선이, 안선희, 안선희, 안성민, 안수경, 안수란, 안수진,
안순옥, 안시은, 안양금, 안영빈, 안영선, 안영숙, 안영실, 안웅열, 안웅열, 안의숙, 안의숙, 안장희, 안정호,
안종주, 안향숙, 안현아, 안현아, 안혜선, 안효진, 양 성호, 양경미, 양경미, 양남현, 양모세, 양병준, 양상
아, 양상아, 양성현, 양영수, 양유진, 양은선, 양재련, 양재평, 양종범 이사야, 양지연, 양진동, 양혜련, 양
혜선, 양혜정, 양호진, 엄경희, 엄미경, 엄승재, 엄예은, 엄인열, 엄준섭, 엄진령, 여병철, 여은정, 여은
지, 여은지, 여은지, 여은지, 여은지, 예: 윤정희, 예: 윤정희, 예:한정오, 오건규, 오건호, 오경옥, 오기표,
오명진, 오미광, 오병근, 오상만, 오상희, 오새름, 오세영, 오세은, 오승진, 오수일, 오순, 오순희, 오영균,
오영민, 오영식, 오영희, 오유리, 오유정, 오윤경, 오은지, 오인철, 오정근, 오정은, 오종현, 오진아, 오찬석,
오창열, 오창희, 오현성, 오현주, 옥선비, 옥선비, 왕수정, 우복례, 우수명, 우영진, 원권식, 원권식, 원권
식, 원남숙, 원성필, 원성필, 원영미, 원영실, 원유승, 원응호, 원의림, 원인자, 원제연, 유급문, 유다은, 유
동호, 유민하, 유병규, 유석괄, 유수상, 유순덕, 유승희, 유영, 유영덕, 유영란, 유영아, 유영욱, 유원선, 유
유미, 유은, 유은실, 유이연, 유재근, 유정주, 유지민, 유지현, 유창근, 유창욱, 유철수, 유철우, 유한영, 유
현웅, 유호삼, 유희경, 유희경, 유희석, 유희창, 윤경미, 윤낙중, 윤미숙, 윤복현, 윤복현, 윤사무엘, 윤선영,
윤선희, 윤설희, 윤성민, 윤성열, 윤성탁, 윤성탁, 윤성현, 윤소영, 윤소예, 윤수연, 윤수정, 윤숙경, 윤애열,
윤용섭, 윤용섭, 윤정선, 윤지민, 윤지민, 윤지영, 윤지영, 윤진이, 윤치상, 윤한나, 윤현경, 윤현화, 윤현화,
윤혜숙, 윤혜신, 윤홍열, 윤희, 이 경자, 이 근, 이강원, 이건복, 이경숙, 이경은, 이경호,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계곤, 이관성, 이광제, 이귀남, 이규석, 이규섭, 이규항, 이규항, 이근백, 이근백, 이근호, 이금희,
이기만, 이기순, 이기환, 이나경, 이나리, 이남수, 이남수, 이남주, 이다미, 이도훈, 이동훈, 이두우, 이두진,
이두진, 이리나, 이리나, 이명배, 이명성, 이명은, 이명혜, 이명희, 이명희, 이목영, 이문희, 이문희, 이미나,
이미선, 이미선, 이미숙, 이미연, 이미영, 이미영, 이미영, 이미정, 이민규, 이민규, 이민정, 이민희, 이범
근, 이병국, 이병국, 이병철, 이보라, 이보라, 이보람, 이보람, 이보순, 이분선, 이산아, 이상록, 이상범, 이
상봉, 이상선, 이상원, 이상원, 이상재, 이상현,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상희, 이새결, 이서연, 이서영,
이서정, 이선경, 이선기, 이선미, 이선영, 이선영, 이선이, 이선화, 이선희, 이설아, 이성경, 이성미, 이성열,
이성훈, 이세인, 이세희, 이세희, 이소망, 이수복, 이수성, 이수원, 이수정, 이수정, 이수정, 이수정, 이수정,
이수정, 이수정, 이수정, 이수정, 이수준, 이수진, 이수진, 이수현, 이수홍, 이수홍, 이숙희, 이순녀, 이순덕,
이순덕, 이순희, 이순희, 이승, 이승연, 이승윤, 이승훈, 이승희, 이시현, 이신자, 이신자, 이신자, 이아람,
이양규, 이양십, 이에스더, 이연정, 이연호, 이영석, 이영숙, 이영실, 이영욱, 이영주, 이영철, 이영현, 이

영효, 이영희, 이에은, 이옥숙, 이옥주, 이용식, 이용준, 이용준, 이용준, 이용준, 이용희, 이우석, 이우철, 이욱종, 이원무, 이원우, 이원희, 이유준, 이윤경, 이윤복, 이윤상, 이윤선, 이윤희, 이윤희, 이은경, 이은규, 이은미, 이은실, 이은영, 이은우, 이은자,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춘, 이은혜, 이은희, 이은희, 이인경, 이장곤, 이장원, 이재균, 이재근, 이재안, 이재은, 이재홍, 이정미, 이정민, 이정선, 이정순, 이정인, 이정표, 이정현, 이정화, 이정화, 이정화, 이정화, 이정화, 이정화, 이정화,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이종광, 이종란, 이종춘, 이종환, 이주영, 이준원, 이종덕, 이종영, 이지선, 이지연, 이지영, 이지영, 이지예, 이지완, 이지웅, 이지원, 이지원, 이지원, 이지원, 이지는, 이지형, 이진선, 이진섭, 이진숙, 이진완, 이진원, 이진호, 이진화, 이진화, 이진화, 이창후, 이창희, 이채윤, 이채윤, 이천근, 이철진, 이춘순, 이태영, 이태일, 이하니, 이한결, 이한나, 이한나, 이한나, 이한표, 이해경, 이해경, 이향이, 이현미, 이현선, 이현숙, 이현아, 이현애, 이현주, 이형대, 이형숙, 이해련, 이해미, 이해정, 이해정, 이해정, 이해진, 이호경, 이호섭, 이호섭, 이호영, 이홍규, 이홍란, 이화실, 이효삼, 이희심, 이희자, 이희정, 이희정, 인은영, 임경미, 임근황, 임기현, 임기현, 임대현, 임명연, 임무자, 임병수, 임보혜, 임복희, 임선민, 임성규, 임성희, 임소연, 임수옥, 임수철, 임신규, 임연주, 임영신, 임영조, 임은아, 임은영, 임은정, 임인숙, 임재옥, 임정현, 임정희, 임제연, 임종홍, 임진영, 임태영, 임하은, 임한결, 임해란, 임현혜, 임형석, 임혜숙, 임효근, 임효정, 장경화, 장교순, 장남혁, 장동만, 장동호, 장동호, 장미정, 장민철, 장보경, 장복현, 장선형, 장선희, 장승미, 장승원, 장영돈, 장영애, 장윤성, 장윤성, 장은숙, 장일수, 장재구, 장재용, 장재혁, 장정림, 장정윤, 장지혁, 장진석, 장필조, 장해수, 장현진, 장혜선, 장혜원, 장효안, 장효정, 전연수, 전경인, 전경자, 전경화, 전경화, 전명옥, 전별, 전병학, 전상규, 전선화, 전성기, 전성배, 전성배, 전성인, 전성인, 전소연, 전윤선, 전재일, 전재하, 전정례, 전정례, 전정협, 전지영, 전지영, 전진영, 전진호, 전태진, 전하영, 전현경, 정경모, 정경숙, 정경옥, 정국진, 정금자, 정기열, 정기영, 정대일, 정대희, 정동은, 정동이, 정동후, 정락여, 정명숙, 정명호, 정명화, 정문영, 정미진, 정병문, 정병문, 정병오, 정병환, 정보람, 정부옥, 정상록, 정선경, 정선순, 정선화, 정성경, 정성우, 정세은, 정세훈, 정소영, 정소자, 정수빈, 정순우, 정승, 정승국, 정승배, 정승아, 정승아, 정아영, 정영숙, 정예린, 정용식, 정용욱, 정용진, 정우량, 정우영, 정우준, 정원각, 정원준, 정원철, 정유경, 정유리, 정유정, 정은숙, 정은영, 정은정, 정은주, 정인규, 정임수, 정재원, 정재학, 정점숙, 정주은, 정주현, 정지원, 정지윤, 정채임, 정하경, 정한식, 정한울, 정현숙, 정현자, 정혜선, 정혜숙, 정혜순, 정호영, 정화순, 정효숙, 정희, 정희선, 정희섭, 정희정, 조강희, 조경수, 조경수, 조경자, 조경자, 조나현, 조나현, 조남규, 조미경, 조미연, 조미정, 조미현, 조미현, 조민규, 조병국, 조부활, 조상우, 조선희, 조성원, 조세호, 조세호, 조소미, 조수경, 조순실, 조아라, 조영미, 조용화, 조윤, 조윤경, 조윤경, 조은선, 조은애, 조은지, 조은화, 조은희, 조인영, 조재범, 조종완, 조지혜, 조춘형, 조현, 조현선, 조현수, 조현아, 조혜리, 조혜은, 조혜정, 조희경, 주미선, 주미순, 주선호, 주유신, 주찬양, 지경숙, 지경주, 지경주, 지석연, 지성윤, 지승훈, 지은이, 지은희, 지재옥, 지재옥, 진소연, 진영란, 진용수, 진우성, 차풍, 차원희, 차은이, 차정환, 차정환, 차종목, 차진수, 채수정, 채순남, 채순남, 채영숙, 채용환, 채용환, 채운석, 채준배, 천수정, 천우석, 천정현, 천종열, 천종열, 천종열, 최정숙, 최경미, 최경옥, 최경화, 최경화, 최경희, 최경희, 최고동, 최고동, 최관용, 최귀순, 최기중, 최남정, 최다이, 최대혁, 최도희, 최도희, 최돈희, 최명자, 최명자, 최명호, 최미라, 최민경, 최버들, 최병구, 최보민, 최봉미, 최봉미, 최봉애, 최상집, 최상집, 최선우, 최선희, 최성우, 최성원, 최성희, 최소리, 최송순, 최수영, 최순옥, 최순옥, 최승옥, 최영심, 최영아, 최영임, 최영주, 최영준, 최윽음이, 최용진, 최유미, 최유정, 최유진, 최윤서, 최윤희, 최윤희, 최은서, 최은영, 최은우, 최은정, 최은주, 최은화, 최인비, 최인수, 최정숙, 최정숙, 최정아, 최정운, 최정화, 최종록, 최종연, 최종현, 최주환, 최주환, 최지희, 최진욱, 최창우, 최충언, 최풍만, 최풍만, 최현경, 최형아, 최혜란, 최혜란, 최화은, 최효재, 최흥종, 최희정, 최희현, 추연주, 추원희, 김영애, 표성훈, 표해숙, 하갑주, 하기송, 하상미, 하상미, 하상희, 하승범, 하연주, 하영선, 하원배, 하원필, 하유미, 하은화, 하정희, 하지선, 한영, 한영, 한가영, 한기명, 한상내, 한서은, 한석구, 한선영, 한설아, 한설아, 한성옥, 한순미, 한승명, 한연례, 한영순, 한완민, 한유미, 한유미, 한임숙, 한재천, 한정숙, 한정하, 한지희, 한진희, 한현정, 한효정, 한희연, 황목스님, 허미경, 허미자, 허성현, 허소영, 허용현, 허은희, 허지영, 허지원, 허진아, 허춘화, 허춘화, 허필자, 허학범, 허현정, 허혜영, 현계순, 현명선, 현용숙, 현유림, 현지현, 홍금표, 홍기원, 홍대로, 홍도미, 홍미영, 홍미희, 홍성순, 홍성옥, 홍순아, 홍승권, 홍영진, 홍옥희, 홍옥희, 홍윤희, 홍선임, 홍선임, 홍종숙, 홍주현, 홍지선, 홍지현, 홍지화, 홍찬, 홍창희, 홍태영, 홍형이, 홍혜은, 홍혜진, 황경애, 황경인, 황기룡, 황다빈, 황동욱, 황민원, 황보화, 황선명, 황선영, 황설화, 황성태, 황소리, 황수연, 황수연, 황순옥, 황영순, 황운성, 황윤경, 황윤경, 황윤식, 황의석, 황인서, 황인옥, 황인현, 황재윤, 황정수, 황정용, 황준영, 황춘화, 황현정, 황현정, 황혜정, murayama ippei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책 해설안

1999년 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에 처한 누구라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아무런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있다.

2016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 상대적 빈곤률은 16%로, 빈곤층이 800만 명에 달한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는 2016년 11월 기준으로 1,656,405명, 인구대비 3.2%로 빈곤층의 20%만을 포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대량의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빈곤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가족에게 지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1. 부양의무자기준, 왜 문제인가?

(1) 부양의무자기준은 빈곤 사각지대를 만든다

2012년 7월, 이씨 할머니가 거제시청 앞에서 음독자살했다. 이씨 할머니는 사위의 소득이 높아졌다고 수급에서 탈락한 뒤 이를 비판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는 유서에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이런 법이 어딤냐’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매해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급탈락을 비판해, 혹은 수급조차 받을 수 없는 빈곤상황에 좌절해 목숨을 잃었다. 50%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 하루 몇 천원 벌기도 힘든 폐지 수집 노동에 노인들을 내 몬 한국 사회의 잔인한 단면이다.

-2010년 기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117만 명에 달한다.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인원은 37,999명에 달했다. 이들은 실제 본인의 소득·재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부합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다.

-2015년 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80.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신청자 중 절반이 넘는 67.59%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탈락자 중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친지, 이웃에게 도움 받는 가구는 24.38%에 불과했다.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도 있다.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 수급신청 시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크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에게 연락이 가는 것조차 부담스럽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류를 받을 수 없어 신청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빈곤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이미 해체되거나 복잡한 가족관계를 갖고 있는 이들에겐 수급신청조차 포기하게 하는 높은 장벽이다.

-2003년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에서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방안을 제외하고는 범위의 조정을 통한 사각지대 축소 효과는 기대한 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이라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2016년 12월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한국사회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위한 좌담회에서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박능후 교수는 “수요가 있지만 충족이 안 되는 대표적인 부분이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입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를 단계적, 지속적으로 축소시켜서 중국에는 부양의무자 규정을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2) 부양의무자기준은 가난을 대물림하게 한다

2013년 12월, 부산의 기초생활수급자인 한 아버지는 딸의 취업 후 수급탈락 소식을 듣고 자살했다. 이혼 후 부산의 요양병원에서 홀로 지내던 그는 신부전증환자였다. 지속적인 입원과 관리가 필요한 그의

병원비는 한 달 100만원이 넘었고, 이제 막 취업한 딸에게 병원비 부담을 지울 수 없어 고민하던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 부양의무자기준은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이 가난해지게 만든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은 실제 부양여부와 무관하게 부양비를 산정한다. 이는 결국 수급자의 수급 탈락이나 수급비 삭감으로 이어지고, 실제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탈 수급'은 했지만 '탈 빈곤' 할 수 없는 생활을 반복하게 된다.
- 부양의무자기준은 수급가구에서 자란 빈곤층 청년세대에게 복지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는 빈곤정책이 오히려 빈곤의 대물림을 만드는 것이다. 수급자인 한 장애인 부부는 딸이 이제 졸업해서 취업을 한다며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 아이가 계속 부양의무자가 되는 건가요?" 라며 괴로움을 표했다.

(3)부양의무자 기준은 법리적 정당성이 없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적 조항

- 국내법에서 친족간 부양의무에 대한 서술은 민법에 존재한다. 민법에서는 부양의무를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로 구분하고 있다. 1차적 부양의무는 부부간 혹은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것'이다. 2차적 부양의무는 부모 및 성년 자녀, 기타 친족간의 부양의무로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격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 민법상의 기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는 2차적 부양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은 1차적 수준의 부양을 요구/강제하고 있다.
- 실제 제도 운영상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은 이미 정당성이 미미한 임의적 기준에 따른 무형의 '부양받을 가능성'을 '간주부양비'라는 이름으로 실제 소득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실제하지 않는 부양비를 수급자에게 소득으로 부과하는 것은 민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법적 권리를 근거로 수급자에게 '부양받을 의무'를 강제한다.
- 즉, 부양의무자기준은 법리적 정당성도 없으며 수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다.

2. 부양의무자기준, 어떻게 폐지할 수 있을까?

(1)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방법 - 법안 내 삭제, 단계별 폐지로 완전 폐지

-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를 '1촌 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 이를 삭제하면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다. 현 20대 국회 뿐 아니라 19대, 18대, 17대 계속해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 2015년 7월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개별급여'로 변화되었다. 현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급여별 기준선을 각각 정해 운영하고 있다. 2015년 7월 이후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교육급여는 취학중인 가구원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 소득보장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 멀다는 점에서 효과가 미미했다.
- 급여별 폐지를 계단삼아 완전 폐지로 나아가면 폐지에 따른 충격을 없애고, 사회적 통합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 폐지를 선언하고, 3년의 시기별로 3단계(1단계 주거급여, 2단계 의료급여, 3단계 생계급여, 3년 뒤 전체 급여에서의 완전 폐지)에 걸쳐 폐지하는 것이다.
- 폐지의 순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상황과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주거급여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가 되었으며, 조사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절차나 준비가 까다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가장 많은 예산이 든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시 3조 1천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건보료조차 체납중인 빈곤가구의 상황, 가족의 병 때문에 가족 전체에 금이 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숙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계급여는 타법과의 조율 등의 시간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한다.
-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예산 3,552,804백만원(118만명, 82만가구),

의료급여 4,799,164백만원(152만명)으로 8,351,968백만원으로 나타난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시 보건 복지부는 2014년 기준, 6조 8천억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전면폐지 될 시 필요한 6조 8천억을 현재 예산인 8조 3천억과 합하면 15조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1%다. 부양의무자기준 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1%를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으며 할 수 있고 해야하는 일이다.

(2)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만들 더 좋은 미래

-부양인식의 변화는 이미 법을 앞지르고 있다. 조사¹⁾에 따르면 부모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의견은 2016년 30%로 2008년 40%에서 대폭 하락, 정부나 정부와 가족이 함께, 부모 스스로 해야한다는 의견은 모두 늘어났다. 특이한 것은 부모 스스로 해결이 11.9%에서 18.6%로 늘어났는데, 개인주의적 경향과 사회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장애인 가족들이 장애인을 살해하고 동반자살하는 살풍경한 일이 한 해에도 수차례 거듭되는 이유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면 사회와 복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행정절차를 간편하게 만들고, 수급자의 낙인감을 줄인다. 지금도 최일선의 사회복지공무원과 종사자들은 엄청난 강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조사업무에 드는 시간과 노력 중 많은 부분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와 변동에 따른 급여 조정이다. 이는 수급자에게도 큰 낙인감과 불안감을 주고 있다. 더 이상 창피 주는 복지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복지제도를 바로 세우자.

1) <2016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2016. 11. 15)

※ 잠깐! 부양의무자기준 Q & A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반대 논리에 대한 반박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가능하며 해야 한다!

(1)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면 부정수급자가 늘어날까?

-부정수급자는 그 자체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지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다고 늘어나는 것이 아님. '나태한 수급자'가 대거 발생한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음. 이는 너도나도 수급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가정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정말 그런지 생각해봐야 함. 서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가구(개인이 아님을 주의)의 기본재산액은 5천 400만원에 불과함. 만약 상당한 자산가가 있다면 단지 수급을 받기 위해 자녀나 타인에게 5천 400만원을 제외한 재산을 완전히 양도할까? 그리고 이미 이런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5년간의 처분재산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며, 이 때문에 거대한 사각지대를 방치한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것과 같음.

(2) 가족이 해체되고 '효' 사상의 퇴보를 가져올까?

-가난한 이들은 오히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해체되고 있음. 가족관계 단절을 인정받아 수급자가 된 경우에 혹여나 가족들과 연락을 하면 수급에서 탈락할까봐 연락조차 기피하게 됨.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라 할지라도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수급비가 깎이기도 함.

-이런 경우 빈곤층은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이 심화됨. 오히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면 가족들이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고, 가난 때문에 약해진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음.

-중산층도 이렇게 높은 수준 (중위소득 초과소득의 30%를 부양비로 산정)의 부양을 하지 못하고 있음. 하물며 빈곤층 가구에게 이런 것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환상임.

(3) 소득이 없는 부유층, 독립 청년세대 등이 대거 유입되는 사태가 있을까?

-이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런 일들을 가능하지 않도록 운영되고 있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를 기준으로 운영됨. 개인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 이상이 되면 수급자가 될 수 없음.

-특히 30세 미만의 청년이 혼자 살더라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별도 가구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즉, 소득이 없는 청년세대가 따로 집을 얻어 산다고 하여도 소득이 적거나 없으면 부모님과 같은 가구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이 수급자가 아니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임.

(4)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나라가 어려움이 빠질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는 생계급여 기준 118만명으로, 절대빈곤층의 절반도 포괄하지 못하는 상태임. 2014년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될 시 97만명의 신규 수급자가 진입, 7조 8천억의 예산이 발생한다고 함.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을 고려할 때 총 15조 가량의 예산이 연간 필요함. 이는 국내총생산량인 GDP의 1%에 불과함.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할 수 있다면 총생산량의 1%를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고 봄.

(5) 당신은 가난에 빠진 당신의 가족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빈곤상황은 심각함. 상대적빈곤은 16%로 드러나지만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5년간 한번이라도 빈곤을 경험한 가구는 전체의 35%였음. 즉, 빈곤상황에 지속적으로 빠져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빈곤과 탈빈곤을 오가는 가구는 세 가구 중 한 가구에 이르고 있음. 우리 사회의 현재 상황은 사적으로 부양책임을 강제할 수 상황이 아니며, 공공부조와 공적연금 등 사회적 제도를 개선해야 함. 연금 등의 제도가 개선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빈곤한 이들을 돕기 위한 공공부조의 대폭적 확대는 필연적임.